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기획예산과-7564
등록일자	2016.5.11.
결재일자	2016.5.16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송장근	조현석	김희주	김용운	주유중	05/16 代 주유중
협조자	연은정				
	주무관				

- 유사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 심사를 위한 -

예산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

□ 개정대상
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: **일부개정**
- 서울특별시 강남구 투자심사위원회 규칙 : **폐지**

□ 개정사유

-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으로 신규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용하여 심사 효율성을 기함에 있음
- 기획예산과-7027(2016.05.04.) 2016년 위원회 정비계획 추진 관련

□ 주요내용

- 위원회 통합 구성에 따른 근거조항 추가 삽입 (안 제1조)
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용중 투자심사 기능 추가 (안 제2조)
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요건과 일치 (안 제3조)
- 강남구 투자심사위원회 규칙 폐지 (부칙 경과조치)

강 남 구
(기 획 예 산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규칙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거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용하여 유사위원회를 정비하고 심사 효율성을 기함에 있음 • 기획예산과-7027(2016.05.04.) 2016년 위원회 정비계획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별 검토사항 [계속 : 0] [신규 :]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border="0"> <tr> <td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>-----</td> <td>(0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>-----</td> <td>(0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>-----</td> <td>()</td> </tr> </table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0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⑤ 시장조사	-----	()	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0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⑨ 투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0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0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 구 비교자료 검토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예산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

중장기 예산 투자계획의 심의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예산 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심사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더하고 관련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요건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함에 목적이 있음

I 정비개요

정비대상 현황

연번	법 규 명	정비내용
1	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일부개정
2	서울특별시 강남구 투자심사위원회 규칙	폐지

정비(개정 및 폐지) 사유

- 지방재정법 제37조의2(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) 개정 사항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‘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’ 구성 규정을 준용하게 됨

⇒ 투자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 필요
- 위원장은 민간위원중 호선, 공무원 위원수를 전체의 1/4로 제한 등

-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적합한 다른 위원회에 대신할 수 있도록 운용 가능
- 기존 투자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촉 기간 만료('16.7.31)로 새로운 위원회 구성 필요
- 따라서, 신규 위원회 구성시 유사위원회 정비계획을 반영, 기존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구성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 및 규칙 폐지 추진

II 주요 내용

1.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

- 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통합 구성에 따른 근거 조항(지방재정법 조항) 추가 삽입 (안 제1조)
-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용중 추상적 문구 삭제 및 투자심사 기능 추가(안 제2조)
-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요건과 일치 (안 제3조)

2. 투자심사위원회 규칙 폐지

- 강남구 투자심사위원회 규칙 폐지
(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시 부칙조항 경과조치 삽입)

III 세부추진사항

- ▣ 부패영향평가 : 평가결과 해당없음 (2016.05.04)
- ▣ 성별영향평가 : 평가결과 해당없음 (2016.05.02)
- ▣ 세부추진일정

구 분	기 간	비 고
입법예고	2016. 05. 20. ~ 2016. 06. 08. (20일간)	
조례규칙심의회 상정	2016. 06월중	
부의공고	의회 상정 전	
구의회 상정	7월 예정(의회개최 10일전)	총무과 → 의회
조례 공포	조례 통과 후	

IV 참고사항

타 자치구 비교자료

- 위원회 통합구성 운용 현황 (2016.4 기준)

연번	기관명	구성 사항	비 고
1	관악구	투자심사위원회 + 재정계획 + 재정공시 심의위원회	
2	구로구	투자심사위원회 + 재정계획심의위원회	
3	금천구	투자심사위원회 + 재정계획심의위원회	

- ⇒ 기존 투자심사위원회 규칙 그대로 유지(미개정) : 6개 구청
 ⇒ 기존 투자심사위원회 규칙 전부·일부개정 유지 : 13개 구청
 ⇒ 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제정(신설) : 2개 구청

투심위원회는 조례로 규정토록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19개 구청은 조례 제 개정 필요

V 행정사항

- 공보실 :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
- 기획예산과 :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및 공포
- 총무과 : 조례 개정안 구의회 상정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
 조례안 1부.
 2. 서울특별시 강남구 투자심사위원회규칙 폐지규칙안 1부.
 3. 관련 법률 자료(참고자료) 1부.
 4. 2016 위원회 정비계획 1부. 끝.

現 위원회 구성 현황

(2016.5 기준)

투자심사위원회					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					
연번	직위	성명(성별)	현 직	비고	연번	직위	성명(성별)	현 직	비고	
1	위원장	*****	기획경제국장	당연직	1	위원장	*****	부구청장	당연직	
2	위 원	*****	기획예산과장		2	위원	*****	기획경제국장		
3	위 원	*****	도시계획과장		3	위원	*****	행정국장		
4	위 원	*****	건축과장		4	위원	*****	보건소장		
5	위 원	*****	서울시정개발연구원 (기획조정 본부장)	위촉직	5	위원	*****	구의원	위촉직	
6	위 원	*****	삼일회계법인 (상무)		6	위원	*****	서울연구원		
7	위 원	*****	서울대학교 (교수)		7	위원	*****	서울시립대 (교수)		
8	위 원	*****	(주)이엔씨기술연구소 (대표이사)		8	위원	*****	서울시정개발연구원 (연구위원)		
9	위 원	*****	서울대학교 (교수)		9	위원	*****	변호사 (법무법인 세이)		
10	위 원	*****	자원봉사센터장		10	위원	*****	광운대 (교수)		
11	위 원	*****	한양사이버대학교 (교수)		※ 통합 운영시 - 공무원수 1/4 이내 조정(과장급 인원 제외) - 특정 성별 60% 초과 금지 준수 (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)					
12	위 원	*****	계명대학교 (교수)							
13	위 원	*****	(주)지아이에스 (부회장)							
14	위 원	*****	서울시정개발연구원 (연구위원)							